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02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조인철 · 박희승 · 정준호
민형배 · 박용갑 · 박지혜
허영 · 어기구 · 이정문
조정식 · 박수현 · 고민정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자등으로서”를 “제공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공자등이”를 “제공자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

2.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 현황

2. 제1항 각 호의 업무 현황

3.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국내대리인 간 연락체계 구축 현황

4. 그 밖에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대리인 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6제1항 중 “제공자”를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7 및 제2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7.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의8.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의5. 제32조의5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u>지정</u>)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u>제공자등</u> 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u>지정 등</u>) ① ----- ----- <u>제공자로서</u> ----- ----- ----- ----- ----- -----.
<신 설>	1. <u>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u>
<신 설>	2. <u>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u>제공자등</u> 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 ----- ----- ----- --- <u>제공자가</u> ----- -----.
<신 설>	⑤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u>

<신 설>

<신 설>

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 현황

2. 제1항 각 호의 업무 현황

3.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국내대리인 간 연락체계 구축 현황

4. 그 밖에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대리인 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공사(국내대리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④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6. (생략)

<신 설>

<신 설>

3. ~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
니한 자

4의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

— •

1. ~ 2의6. (현행과 같음)

2의7.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
니한 자

2의8.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 12. (현행과 같음)

② _____

—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4의4.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 2의4. (생략) <u><신설></u> 3. ~ 24. (생략) ④ (생략)	---.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제32조의5제6항에 따른 <u>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 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u> 3.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